

## 2018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11월>

(주제: 글로벌 반부패 동향)

## 전문가 코칭

### 글로벌 반부패 동향



이 상 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Q1.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국제적인 움직임은 무엇인가?**

현재 주목해야 하는 글로벌 반부패 움직임은 오는 10월 22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세계부패방지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서 발표될, 기업 부문의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에 맞춰져 있다.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은 유엔글로벌컴팩트, 유엔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으로 이어져 왔으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뇌물방지 기업경영원칙과 공기업 부패방지 10가지 경영원칙 등의 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이번 18차 IACC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국제적인 논의와 결의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함께 행동하고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패를 추방하는 일, 특히 기업부문의 부패 추방을 위해서는 기업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반부패 국제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이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사후적인 대응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에서는 뇌물(부패)이 조직과 개인에게 미칠 치명적인 위험과 손실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가 사후 처리에 드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을 비롯한 조직의 뇌물(부패)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이다. ISO 37001이 그간의 국제적인 노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은 비단 ISO 37001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당국의 기소나 양형에 중요한 사유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이라고 하는 영국의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에서는 기업의 뇌물을 막기 위한 노력에 따라 기업의 항변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업의 뇌물을 막기 위한 조직 내부의 노력을 평가하여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책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Q2.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부패 활동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 규모 대비 여러 가지 사회지표는 부끄러운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부패 방지 영역도 그러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서 발표한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한국은 50위권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반부패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의 기업들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있다는 점에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보면, 대기업의 실무선에서는 국제적인 반부패 동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반부패 활동에 뒤처져 있는 이유는 최고경영층의 무관심에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동향에 앞서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국가와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 수많은 국제적인 논의가 있고 한국 정부가 참여하여 결의한 수많은 가이드와 협약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인 모양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가이드나 협약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자발적인 예방적 조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 ISO 37001 Study

### Ch10. ISO 37001 요구사항 [ACT, 개선 단계]

조직은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사업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진단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앞선 평가 단계를 바탕으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Q. 한국상사 ○○실장은 부패방지를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성과와 현황을 진단했습니다. "새롭게 도입하게 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조직 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CT, 개선 단계]인 10장은 본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마지막 장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진단한 부적합한 사항들을 조치하기 위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조직이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ACT, 10장. 개선]

##### ① 부적합 및 시정 조치

조직은 지난 성과 평가 단계를 통해 수립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시, 다음의 사항을 실행해야 합니다.

##### √ 부적합 사항을 즉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 그 후 결과 대응

##### √ 부적합 사항의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 필요성 평가

- 부적합 사항 검토
- 부적합 원인 결정
- 유사한 부적합 요인의 존재 및 잠재적 요인 발생 가능성 평가

##### √ 필요한 모든 조치 실행

√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 필요 시, 조직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변경

\*부적합 사항은 해당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부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시정조치는 부적합 사항이 야기하는 영향력과 비례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부적합 사항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시정조치 결과 내용 모두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해야 합니다.

② 지속적인 개선

조직은 이후에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번 호에서는 ISO 37001 요구사항의 마지막 단계인 ACT 10장 '개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ISO 37001 Study'에서는 이러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이행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돋보기

### 글로벌 부패방지법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 단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진출 국가의 반부패 규제화 동향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있을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경영 활동에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부패 관련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반부패법 제정 국가들 중, 우리 기업과 무역에 있어 중요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유럽(영국, 프랑스)

2011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우리 기업들의 EU 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EU의 반부패 관련 주요 제도로는 2011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반부패 패키지가 있으며, 회원국 차원에서도 상당수가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적 도구를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유럽 수출 상대국이자 주요 반부패법 제정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영국, 뇌물수수법

영국의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은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이다. 영국 뇌물수수법의 적용 대상은 영국 기업 및 자회사,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영국 기업의 해외 에이전트 모두를 포함하며, 부패 범죄 발생 지역을 불문하고 영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공여, 약속, 수뢰 및 기업 간 뇌물수수 행위 모두를 범죄로 규정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관련된 기능에 종사하는 사기업 업무담당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적 성질을 갖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혹은 사업·무역·전문직업·고용 등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나 공공기관 대리 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사례: 대표적인 뇌물수수법 위반 사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 영국 법인의 위반 사례를 들 수 있다. 2013년에 스탠다드은행은 수익성 채권 위임을 목적으로 탄자니아 자회사인 스탠빅 탄자니아(Stanbic Bank Tanzania)를 통해 탄자니아 정부 고위 관리에게 6억 달러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에 총 1680만 달러(약 191억 원)의 벌금과 총 3220만(약 366억 원) 달러에 달하는 부패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또한 현지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투명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부과된 420만 달러(약 47억 원)를 지불해야 했다. 하나의 부패 행위로 인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처벌되면서 은행은 더 큰 피해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은행은 부패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SFO에 자진 신고를 하며 협조적인 태도로 대응했고 그 결과, 벌금의 1/3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보다 유연하고 당국에 협조적인 태도가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 프랑스

**프랑스, 사팽2법**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프랑스의 반부패 관련법으로는 2016년 제정한 사팽2법(Sapin II Law)이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매출 규모 1억 유로 이상에 근로자 500명 이상의 프랑스 기업 및 기업 대표자/경영진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관계 회사들이다. 특히 이 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적용 대상 기업들이 부패 및 로비 범죄를 예방 및 감지하는 준법 감시 기관/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 위반 처벌 규정, 부패 리스크를 표시한 리스크 매핑(mapping),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평가, 내·외부 회계 감사, 교육, 내부고발제도, 효율성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포함한 8대 요건을 갖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 파리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링, 건설 서비스 회사인 테크닙(Technip)이 있다. 테크닙은 미국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인 케이비알(KBR, Kellogg Brown & Root)을 비롯한 회사들과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관련 합작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나이지리아 공무원들에게 1억 8000만 달러(약 2049억 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케이비알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중 드러났으며, 테크닙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9800만 달러(약 1115억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테크닙이 미국 증권 시장 상장사가 아니었음에도 케이비알의 파트너였다는 이유로 해외부패방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테크닙은 해외부패방지법의 고액 벌금 순위 TOP 10위에 랭크되는 등 막대한 과징금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테크닙 사건은 프랑스 내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는 데 일조했고, 이는 사팽2법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2위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최초 국제 반부패법인 해외부패방지법 제정국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미국의 주요 부패방지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의 처벌 대상을 아시아권으로까지 확장해왔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부패방지법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일명 '미 당국의 해외 부패기업 사냥법'인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주로 외국 공무원, 정당 등에 대한 뇌물공여자이다. 이 법은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의 통신망 혹은 전산망 등을 이용해 부패 행위를 했거나 미국 영토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이 되면, 기업은 수출 면허가 박탈되거나,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이 금지되고 증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에스에스아이 코리아(SSI Korea)가 있다. 이 회사는 제철, 금속 재활용 및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미국 슈니처(Schnitzer)라는 회사의 한국 자회사이다. 슈니처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자사의 고철을 판매할 목적으로 에스에스

아이의 종업원 및 대리인들을 통해 한국의 제철소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뇌물은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환불” 혹은 “할인” 등의 형태로도 제공되었고, 회계 장부 등에서는 이를 교묘히 감췄다. 결국, 슈니처는 거의 8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였고,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를 3년 간 보유해야만 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슈니처는 결국 자회사의 부패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와 함께 이미지 실추라는 쓰디쓴 결과를 얻게 되었다.

◎ **중국**

현재 우리나라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부패 척결 슬로건 하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엄격하게 뇌물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지는 필수적이다.

**중국, 형법과 중국경쟁법**

중국의 부패 방지 관련 주요 법에는 중국 형법과 중국 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중국경쟁법)이 있다. 먼저 중국 형법은 국가공무원 및 국가 기관, 국유기업, 회사, 기관, 인민 조직 등이 포함되는 단체들에 적용되며, 뇌물의 공여 및 수수 모두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중국 경쟁법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으로는 처벌로서 경영자의 공개신용기록에 처벌사항을 기록하여 신용등급을 훼손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영국계 대형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의 뇌물 전달 스캔들이 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자사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내 의사, 의료기관, 병원 직원 등에 2007년부터 6년간 약 30억 위안(약 4915억 원)의 뇌물을 여행사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중국 형법에서 금지하는 뇌물공여 행위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고위 관리자들에게 2~4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회사는 30억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중국 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의 매출액은 급감하여 2012년 중국에서의 7억 5900만 파운드(약 1조 1138억 원)의 매출이 2013년에는 5억 8000만 파운드(약 8512억 원)로 감소했고 2014년 역시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보이며 하락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 **아세안(베트남)**

2020년에 이르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1000억 달러(약 113조 원)를 넘어서며, 중국 다음의 2대 수출시장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신흥 시장으로서의 급부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거론되며 양국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아세안에서 베트남의 부패방지법을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베트남, 베트남 형법**

베트남의 부패 방지 관련 주요 법률로는 1999년 제정된 후 2015년 개정된 베트남 형법(Penal Code)이 있다. 이 법은 공공 부문의 뇌물수수, 공여죄 모두를 위법으로 간주하며, 2015년의 개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뇌물 및 외국 공무원, 그리고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임직원 역



시 뇌물수수죄, 공여죄, 뇌물 중개 및 횡령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닌다. 뇌물의 기준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2백만 동이다. 다만, 법인의 형사책임은 영리 목적의 법인에만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사례: 도쿄에 기반을 둔 일본의 철도건설업체인 일본교통기술(JTC)가 있다. 2014년에 일본 매체가 일본교통기술이 철도설계사업 등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을 보도하자, 베트남 당국은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일본교통기술 임원 세 명이 4100만 달러(약 466억 원) 가치의 ODA 사업 수주를 대가로 베트남 철도회사 공무원에게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약 49만 5천 달러(약 5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본교통기술은 일본 법원으로부터 관련 임원 징역 및 9천만 엔(약 9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일본 국제협력기구는 베트남과의 ODA 관련 부패가 3번 발생할 경우, 베트남 ODA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ODA 사업 자체와 밀접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교통기술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참고\*\*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유럽편-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ASEAN편 (베트남·인도네시아)-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아시아·중국편-

국민권익위원회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베트남 신흥시장 - <https://www.ajunews.com/view/20180822133417402>

권익위 해외부패방지법 - <http://blog.daum.net/loveacrc/10391>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반부패 입법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영국 뇌물수수법 위반 기업 사례 -

<https://thenerveafrica.com/23223/bogolo-kenewendo-politics-and-economics-are-not-all-but-swanas-minister-of-investment-trade-and-industry-has-up-her-sleeves/>

베트남 반부패법 기업 위반 사례 -

<http://www.thanhniennews.com/society/6-vietnamese-railway-officials-receive-jail-terms-in-bribery-scandal-52968.html>

## 윤리연구소-인사이트 +

###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은 부패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 제재와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며,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비단 대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점차 많은 중소기업이 부패를 경영상의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 ◎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

2013년 국제공인회계사협회인 ACCA(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ACCA)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뇌물과 부패의 영향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응답자들이 부패가 상거래의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수익성을 저하시킨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 및 부패가 해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며 부패 리스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부패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의 구조

대다수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패에 취약하다. 중소기업이 뇌물 요구를 거절하여 사업이 중단되면,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뇌물 제공에 대한 요구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패한 요구를 거절할 협상력이나 영향력이 미미하다. 또한 공개 상장으로 엄격한 증권 거래 규율 대상이 되어 정보가 공개되는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은 비교적 정보가 통제되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패 리스크에 덜 민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부패 기준도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감 역시 증대되면서 중소기업 역시 반부패 준법 윤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행해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 ◎ 반부패 가이드라인

이러한 흐름은 2016년 글로벌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표준 규정을 중소기업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단계별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 1단계: 우리 기업의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

중소기업이 반부패 활동을 위해 이행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부패 리스크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대기업보다 기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임직원 수도 적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통해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기업은 '위험 신호' 감지를 통해 부패 리스크 영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으며, 리스크 수준 역시 판단할 수 있다. 아래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자.

<Check list> 부패 리스크 수준 (높음/중간/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	Yes	No
- 사업을 수행하는 시장 내에서의 리스크가 높은 영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부패에 관한 지역 법률 및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업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합작 투자자를 비롯해 사업 파트너의 이력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대체로 'Yes'라면, 기업은 부패 방지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항목이라도 'No'가 나왔다면, 관련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별한 영역에서의 부패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 완화 조치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 2단계: 특정 부패 이슈

앞서 나온 다양한 형태의 부패를 일관된 기업 시스템과 절차를 통해 다루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합법적 사업 관행과 위법 행위 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 어렵게 느껴진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은 모호한 지점을 해결해야 한다. 예로, '급행료 요구' 및 '공무원 접대'라는 두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 시나리오 1. 입국을 위한 급행료 요구

**#상황:** 기업 임직원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에서 임직원이 적절한 여권, 비자 및 필요 서류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입국하기를 원한다면 50달러의 급행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대응:** 기업은 공항직원의 뇌물 요구 수법 및 장소 등에 관한 일관된 지침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24시 긴급 전화망(hotline)을 제공하여 임직원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나리오 2. 외국 공무원과의 만찬

**#상황:** 한 영국 기업 A사는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전력수급 계약에 입찰했다. 해당 국가의 전력 담당 부서 고위급 간부 및 기타 공무원들과의 미팅은 저녁 식사 자리로 마련되었고, 식사 후, 기업 관리자는 모든 계산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응:** 기업은 공무원 또는 파트너에게 영국 뇌물수수법 및 기업 유흥관련 규정과 계약 성사를 목적으로 한 이와 같은 식사 접대는 범죄로 규정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기업을 뇌물법 위반 사항에 노출시킨 경우에는 기업 경영진 및 법무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3단계: 행동강령 제정**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끝났다면, 기업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반부패 정책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행동 강령이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p><b>가. 실천 의지를 표명한 CEO의 메시지</b></p> <p><b>나. 행동 강령이 필요한 이유: 회사의 가치, 비전, 임무 및 전략적 방향 제시</b></p> <p><b>다. 세부 영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행동: 직원 개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설명</li> <li>- 부정 또는 부패행위 정의: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명확히 구분</li> <li>- 회사 자원의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이용, 지적 재산, 비밀 유지 등 회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소개</li> <li>- 이해 상충, 선물 및 혜택: 뇌물 여부 판단이 모호한 영역에 속하는 항목을 다루는 방법 설명</li> <li>- 행동 강령 위반이 의심될 때 신고하는 방법</li> </ul>
---

**4단계: 반부패 이행: 예방, 탐지, 대응**

정교한 감사 및 준법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반부패 정책 이행을 위해 예방, 탐지,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예방 “CEO의 의지표명”

예방 절차에는 오너 및 **고위 경영진의 준법, 윤리 경영의 실천에 대한 지지와 의지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에는 사내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과 지속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준법 감시인을 지명**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재무 거래 관련 업무에 대해 **명확한 사내 지침을 수립**하고, **직원 및 사업 파트너를 파악**하여 부패 리스크를 예방한다.

2) 탐지 “정확한 장부와 기록 관리”

철저한 예방과 동시에,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탐지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정확한 장부와 기록 관리**이다. 기업은 그 후 내부(내부 조사 및 감사, 옴부즈맨) 및 외부(외부 감사, 제3자 접수 내용, 언론 보도, 옴부즈맨) 경로를 통해 **위반 여부를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다.

3) 대응 “적절한 인센티브와 징계”

그렇다면 부패가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재 조치는 실효성, 적절성, 일관성, 신뢰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재 및 처벌과 함께 보상을 적절히 함께 적용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도 효과적이다. 모범 행동에 대해 ‘당근’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가 준법·윤리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사보에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등의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업종과 문화에 맞는 **소통 및 교육**을 시행하는 것 역시 반부패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된다.

**5단계: 제3자 실사**

그 다음으로는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3자 실사를 시행한다. 실사는 비즈니스 수행 시 관계를 맺는 다양한 제3자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요 항목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li> <li>2. 재무 상태와 계약 대금 지급</li> <li>3. 제3자의 역량 (관련 자격 및 경험이 충분한지, 높은 수수료 요구 경험이 있는지,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 등)</li> <li>4. 공식 기록 (과거의 부패 이력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인터넷 등으로 검색)</li> <li>5. 평판 (사업과 관련해 주변 관계자들의 의견 참고)</li> <li>6. 윤리 경영과 준법 감시에 대한 접근 방식</li> </ol> |
|---|

**6단계: 모니터링**

마지막 단계로, 기업은 반부패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시스템, 대응 방안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쉽게 현황 및 성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부패 시스템 및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반부패 시스템 및 절차가 급행료 위험 최소화와 같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반부패 시스템 및 절차가 법적 책임, 경제적 불이익, 평판 하락과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장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했는지	반부패 시스템 및 절차와 결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위험을 어느 정도 최소화 했는지

참고

\*페어플레이클럽,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 윤리연구소-보고서 리뷰

### 반부패와 기업의 혁신

반부패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반부패 노력을 통해 기업이 얻는 실질적인 효익은 무엇일까? 이번 윤리연구소에서는 반부패 노력이 기업의 경제적인 성장과 직결되는 혁신(innovation)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Xu)와 야노(Yano)의 논문, “반부패는 기업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국의 최근 반부패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 반부패 노력과 기업의 혁신 간 관계

‘부패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부패가 끼치는 악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기업에 주는 효익은 무엇일까? 기업의 경제 성장에 이로울 것일까 아니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해로운 것일까? 우리는 기업의 혁신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반부패와 혁신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반부패 노력이 기업의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윤리연구소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중국의 반부패 노력이 중국 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financing) 및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09년에서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의 반부패 활동, 외부 조달(부채와 자본), 그리고 연구개발에의 투자액이라는 세 가지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반부패 노력이 실제로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 반부패 노력을 통한 징수 및 지대추구 방지 효과

이 논문의 저자들은 분석 결과, 크게 징수(expropriation) 및 지대추구(rent-seeking)의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부패 활동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반부패 노력은 징수와 지대추구 활동을 방지 및 완화하며, 기업이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징수 방지 효과

먼저 대내외적인 반부패 노력이 징수 활동을 방지하는 측면을 살펴보자. 징수 활동이란 공권력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일컫는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혁신적인 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이 부패한 관료들에게 ‘징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활동을 주저하게 된다. 부패한 환경에서는 개발자의 가치사슬 내에 관련 당국 및 관료가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개발 과정 내에서 필요한 허가증이나 특허 및 기타 정부 서비스들에 대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업 행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개발과 관련된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국가 승인 기관의 부패한 관료가 특허 승인 혹은 품질 증서 등을 발부하는 데에 뇌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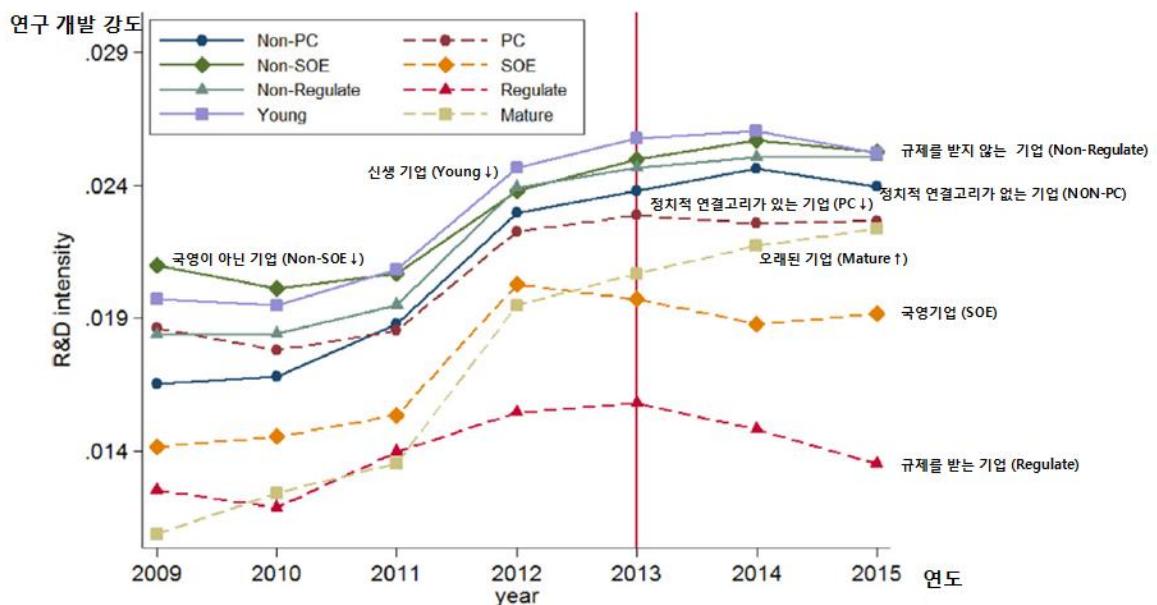
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엮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의 혁신 기술을 모방하고자 하는 경쟁사가 자신의 위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부패한 법정에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까지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의 혁신을 위한 개발 활동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는 본질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혁신 활동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반부패 조치는 이러한 징수 활동을 방지 및 완화하는 효과를 일으키며, 기업의 혁신 활동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제도적 신뢰를 증가시켜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대추구 방지 효과**

두 번째로, 반부패 노력은 기업들의 지대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대추구란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를 독과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기업 간 비생산적인 경쟁이 초래된다. 부패 행위에 대한 대가가 높은 부패한 환경에서는 기업들은 혁신 활동과 이를 위한 투자 대신,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 관료들과의 관계 구축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력한 반부패 노력은 부패 행위에 대한 위험 부담 및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계적 자본의 가치를 감소시켜, 기업들이 지대추구 행위 대신 혁신 활동을 하도록 촉진한다.

◎ 중국 상장사들의 연구개발과 반부패 효과

| 중국 상장사들의 연구개발 강도 동향 |



※ 출처: Xu & Yano (2017), p.513

저자들이 제시하는 위 그래프는 반부패 노력이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시진핑 주도의 강력한 반부패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 상장회사들의 연구개발 강도 동향을 살펴보면, 정치적 연결고리가 없는 기업(non-PC, non-politically connected), 국영이 아닌 기업(non-SOE, non-state owned enterprise),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non-regulate), 그리고 신생 기업들은 반대의 경우보다 높은 연구개발 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패한 당국 및 관료들의 개입 확률이 비교적 낮은 기업들이 부패로부터 더 자유로우며, 혁신 활동의 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적인 반부패 노력이 기업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논문과 같은 결과는 비단 중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보다 청렴한 국가와 사회로, 청렴한 기업문화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부패한 환경에서보다 대내외적으로 철저하게 반부패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을 때,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의 주요 요소인 연구개발과 관련된 활동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대수익률을 높여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반부패를 위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싶다.

\*참고

- Xu, Gang & Yano, Go (2017) 'How does anti-corruption affect corporate innovation? Evidence from recent anti-corruption efforts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5: 498-519.



## 뉴스클리프

## 국내 동향

**1. 국민권익위원회,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인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 보조금 불법 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및 아동학대 등을 포함한다. 신고는 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또한 권익위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영유아 시설의 집중신고를 통해 부패 빈발 지역 및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나갈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뉴스웍스, 10.14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21>

**2. 정부, 인공지능(AI) 윤리 현장 제정 계획 공포**

정부는 로봇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AI 윤리 현장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본 현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자, 제조자 및 사용자별 구체적 행동지침을 담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후, 전문가들의 연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로봇 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다만, 산업적 측면과 아울러,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화된 윤리현장 제정은 중앙정부 주도의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윤리 현장 제정 사례가 된다.

\*참고 - 머니투데이, 10.0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0417145978850&type=2&sec=politics&pDepth2=Ptotal&MNE\\_T](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0417145978850&type=2&sec=politics&pDepth2=Ptotal&MNE_T)

**3. KB국민은행, 국내 시중은행 최초 지속가능채권 발행**

지난 10월 17일, KB국민은행은 친환경 및 사회 지원 프로젝트에 사용될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자는 지역별로 아시아(71%)와 유럽(29%)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 및 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정적인 신용도와 우수한 영업실적 등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참고 - Zednet Korea, 10.17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01709382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017093823)

## 해외 동향

### 1. 중국, 인터폴 총재 체포, 의법치국(依法治國)과 반부패의 확고한 의지 증명

중국 외교부는 인터폴의 명홍웨이 총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한 것과 관련해, 이는 중국 정부의 “의법치국과 반부패를 확고히 추진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명홍웨이는 이미 서면으로 인터폴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중국 공안부 역시 인터폴 집행위원회에 총재의 체포에 대해 공식으로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인터폴 활동을 지지하며 “회원국들과 함께 범죄 분야 실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 SBS, 10.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64011](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64011)

### 2. 골드만삭스, 윤리적 신흥시장펀드 출시 계획

골드만삭스가 윤리 경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시장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포트폴리오를 신흥시장펀드 운용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루크 바스(Luke Barrs)은 ESG 이슈가 기업 수익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현재 ESG 차원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및 경영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곳임을 강조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신흥시장에서의 ESG 펀드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윤리적 신흥시장 펀드 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 - FT Adviser, 10.11

<https://www.ftadviser.com/investments/2018/10/11/goldman-sachs-launches-ethical-emerging-market-fund/>

### 3. 글로벌 의류회사, 윤리적 의류 소재 사용 확대

뉴질랜드의 의류회사인 울스오브뉴질랜드(Wools of New Zealand)가 추진하고 있는 윤리적 ‘모(wool)’ 사용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영국의 대형 의류회사인 맥스앤스펜서(Marks & Spencer)와 함께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남성복 라인을 출시했다. 사용된 소재에는 국제적 기준인 ‘책임 있는 울 기준’ (Responsible Wool Standard, RWS)의 인증을 받은 램스울 등이 포함된다. 울스오브뉴질랜드의 최고경영자인 메이지(Mazey)는 윤리적인 토지 관리 및 동물보호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의류 상품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의류 출시가 이 같은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맥스앤스펜서의 원료 전문가인 타운샌드(Townsend)는 대외 구매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동물보호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울 소재의 공급망 상황을 파악하여 공급망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 Newshub, 10.17

<https://www.newshub.co.nz/home/rural/2018/10/ethically-grown-wool-showcased-in-major-uk-retailer.html>

## 국내·외 소식

### <국내행사>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전망 토론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규제대응 역량 강화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전망과 향후 과제를 토론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일시 2018년 11월 2일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http://bisd.or.kr/m/news/news\\_view.asp?bKind=1100&bCode=1101&sid=14265&action=VIEW&curNum=1&page\\_num=01](http://bisd.or.kr/m/news/news_view.asp?bKind=1100&bCode=1101&sid=14265&action=VIEW&curNum=1&page_num=01)

#### 제 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 웰빙의 미래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역할의 변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웰빙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 논의

주최 통계청, OECD

일시 2018년 11월 27일 ~ 11월 29일

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https://www.oecd-6wf.go.kr/kor/main.do>

### <해외행사>

#### The 8<sup>th</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ility and Responsibility

“변화의 시기 속에서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주제로 학계, 기업인들 및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지속가능성과 책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논의

주최 Center for Advanced Sustainable Management (CASM)

일시 2018년 11월 14일 ~ 2018년 11월 15일

장소 Cologne, Germany

<https://www.international-csr.org/>

#### Certified Sustainability Practitioner Program 2018

지속가능경영 실무자들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참고 도구 및 자료 등을 제공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주최 Center for Sustainability & Excellence (CSE)

일시 2018년 11월 11일 ~ 11월 12일

장소 Dubai, United Arab Emirates

<https://cse-net.org/trainings/certified-sustainability-csr-practitioner-program-advanced-edition-2018-dubai-uae-november-11-12-2018/>

##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 제약업계,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노력

제약업계가 청탁금지법 준수를 포함한 윤리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18일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을 개최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세션에서 제약 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 및 제약사 직원의 리베이트 소송 관련 판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규율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과 제약업계의 직무 관련성 등을 소개 및 학습하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달, 협회는 '제약인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 2018 CP(Compliance Program) 핸드북'을 발간해 의약품 시장 투명화 제도의 일부인 청탁금지법의 주요 사항들을 설명하며, 청탁금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접을 통한 영업'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업'으로 관행을 바꾸면서, 보다 명확한 준법 가이드라인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50>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60>

### 청탁금지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지적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며 많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반 사건을 처벌하는 데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위반 처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 총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34명 중에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2명인 다수는 서면심사로 결론을 내는 약식기소로 처분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부 각 부처의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역행하는 미온적 처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7/0200000000AKR20181017160300004.HTML?input=1195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018000365>

## 지식 1g

### ‘소탐대실(小貪大失·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

소탐대실은 복제 유주의 ‘신론’에 나오는 말이다. 전국시대 주(周)나라의 제후국인 진나라 혜왕은 촉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계략을 짰다. 혜왕은 촉후가 욕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소를 조각하게 한 다음,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채워 넣고 ‘쇠똥의 금’이라 칭한 후 촉후에게 예물로 보낸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촉후는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진나라 사신을 접견했다. 진의 사신이 올린 헌상품의 목록을 본 촉후는 재물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백성들을 징발해 보석으로 채워진 소를 맞을 길을 만들었다. 혜왕은 보석의 소와 함께 장병 수만 명을 촉으로 보냈고, 촉후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도성의 교외까지 몸소 나와 사신을 맞이했다.

그러나 갑자기 진나라 병사들은 숨겨 두었던 무기를 꺼내 촉을 공격했고, 결국 촉후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로써 촉은 망하고 보석의 소는 촉에게는 치욕의 상징으로 남았다. 촉후의 소탐대실이 나라를 잃게 만든 것이다. 이 일을 두고 작은 보물 몇 개를 얻으려다가 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회사를 망하게까지 하는 부패... 소탐대실이 아닐까?

##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1. 글로벌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 기업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반부패 경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화장품 L사, K님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부패 리스크와 반부패를 위한 교육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닝(E-Learning)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경영문화 개선 강의를 필수 수강해야 하는데요. 특히 반부패 관련 예시를 보며 답을 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점수를 얻어야만 패스(Pass) 가능하고,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만큼 기업 내부 구성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내부 구성원의 부패한 행위로 인한 범죄 및 내부 구성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Q2. 반부패 규제 강화속에 우리나라 역시 청탁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이 시행 2주년이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J 학교, C교사

꽤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을 둘러보아도 시행 전과 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학부모나 학생을 포함한 상대방이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 "청탁금지법 때문"이라며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의 표시라며 가져오는 선물을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받을 수도 없었던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곤란한 상황들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학부모 및 학생들도 '모두가 하는데, 우리만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하는 식의 선물 관련 걱정을 덜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교사들 역시 외부적인 자리에서의 의례적인 예의 갖추기 혹은 선물 증정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 사례 응모

### 이 기업을 추천합니다

-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독자의견을 수렴하여 윤리경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하단의 담당관실 메일주소를 통해 추천하고 싶은 우수 기업과 관련 내용을 보내주세요

## 독자퀴즈

Q. 다음 중 글로벌 반부패 규제 대응을 위해 제정된 국가별 반부패 법이 아닌 것은?

- ① 미국 FCPA
- ② 독일 GDPR
- ③ 프랑스 사팽 2법
- ④ 중국 경쟁법

● 지난 호 정답 : ① 번

● 정답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jykim5@ips.or.kr)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자는 김태희님, 이명진님, 이재황님, 황준상님, 윤연지님 입니다.  
축하드립니다!!